

덕산면사무소 정기 종합감사 결과보고

《 감사개요 》

- 감사기간 : 2020. 9. 16.(수) ~ 9. 18.(금)
- 감 사 반 : 8명(감사팀장 외 7명)
- 감사범위 : 2018. 11. 7. ~ 2020. 9. 15.
- 중점감사내용
 - 출장 및 연가, 공사, 초과근무 등 복무 위반 행위 점검
 -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지연·방치 등 직무태만, 소극행정 집중점검

■ 감사결과

(단위 : 건, 천원)

일련 번호	소 관	제 목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시정	주의	기타	계	지급	회수	부과
계		20건	10	10	-	29,459	-	57	29,402
1	총무팀	공용차량 차량정비대장 작성 소홀	●						
2	총무팀	지역개발채권 매입 부적정	●						
3	총무팀	수입인지·인지 징수 부적정	●						
4	총무팀	공사대금 지급 지연 등 소극행정		●					
5	총무팀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						57
6	총무팀	건설공사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부적정	●						
7	총무팀	건설공사 도급계약 부적정		●					
8	총무팀	건설공사 하자검사 소홀		●					
9	주민생활	쓰레기 종량제봉투 공급과 판매업무 소홀	●						
10	산업개발	축산분야 FTA 폐업지원 사후관리 소홀	●						
11	산업개발	산불진화장비 대장 관리 소홀	●						
12	산업개발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생선회 배부 소홀		●					
13	산업개발	제10호 태풍 '하이선' 대비 축산시설 등 사전대비 철저 업무 소홀		●					
14	주민생활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정부양곡 할인 지원사업 소홀		●					
15	주민생활	장애인 재판정에 따른 업무처리 소홀		●					
16	주민생활	반송된 납세고지서·독촉장 공시송달 소홀		●					
17	주민생활	상속에 따른 취득세 미신고분 수시 부과 소홀	●						29,402
18	산업개발	농기계 사후 관리 소홀		●					
19	산업개발	농지원부 관리 소홀		●					
20	산업개발	2020년 부직포활용 친환경 고추생산 지원사업 업무 소홀	●						

주요지적사례

[1] 공용차량 차량정비대장 작성 소홀

- 「예산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6조에 의하면 “기록관리를 위하여 차량운행일지, 유류수불대장, 차량정비대장 등 관련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럼에도 덕산면에서는 감사기간 동안 정비이력이 있음에도 차량정비대장을 작성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추진한 사실이 있다.

[2] 지역개발채권 매입 부적정

-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건설공사 도급계약 및 용역계약 또는 물품구매, 수리제조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별표 1]의 매입대상 및 매입기준에 의거 건설공사 및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부가세를 제외한 대금 공급가액의 2.5/100, 수리·제조계약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5/100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럼에도 덕산면에서는 4건의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출함에 있어 계약자가 채권매입필증을 제출하지 않거나 적정금액보다 적은 금액의 채권매입필증을 제출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대금을 지급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추진한 사실이 있다.

[3] 수입인지·증지 매입 부적정

-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무)에 따르면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동법 3조(과세문서 및 세액)에 의거 기재금액이 천만원초과 3천만원이하인 경우 2만원,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4만원,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7만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의 수입인지를 징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아울러 「예산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3조(요율)에 의거 수의계약 견적서 (예정가격 1,000만원 이상)에 예산군 수입증지(10,000원)를 징수해야 한다.
- 그럼에도 덕산면에서는 천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을 진행하면서 대한민국 수입인지 및 예산군 수입증지를 징수해야 함에도 징수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추진한 사실이 있다.

④ 공사대금 지급 지연 등 소극행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되는 계약의 대가는 제64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럼에도 덕산면에서는 2건의 공사대금을 관계 규정보다 3일 지연해 입금하는 등 관련 규정 준수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⑤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르면 정규 근무일을 기준으로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공무원으로 하고 별도의 시간외근무명령이나 승인 없이 월 10시간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하며,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15일에 미달하는 매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또한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강등·정직·직위해제·휴직·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방학·결근 등의 사유가 있어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 출근 근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1일 근무시간(8시간)을 모두 근무하는 경우에는 출근 근무일수로 인정할 수 있다.
- 아울러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시간 적용 예외로 재난·재해 등의 발생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간외근무명령을 명하는 경우에는 상한시간 제한 없이 시간외근무명령을 발령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다만 월간 시간외근무명령은 70시간을 초과할 수는 없다.
- 그럼에도 덕산면에서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면서 12일 출근한 직원에게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을 감액하여 지급하지 않았으며 월간 시간외근무명령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등 시간외근무수당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

⑥ 건설공사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계약의 담보책임)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제1항에 따라 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제6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별표 4의 건설공사 종류별 책임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 그럼에도 덕산면에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자에 대한 충분한 담보 책임 존속기간을 설정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⑦ 건설공사 도급계약 부적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르면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며
- 같은 법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발주자는 도급하려는 건설공사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의 필요성,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럼에도 덕산면에서는 시공기술상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토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와 계약하여야 하나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추진한 사실이 있다.

⑧ 건설공사 하자검사 소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69조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고,
-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에 의하면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해야 하며, 최종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 그럼에도 덕산면에서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최종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하자검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⑨ 쓰레기 종량제봉투 공급과 판매업무 소홀

- 「예산군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르면 쓰레기봉투의 공급과 판매에 관한사항은 읍·면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며,
 -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의하면 읍·면장은 쓰레기봉투와 대형폐기물 판매수수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 납부필증 판매수수료를 수납부에 쓰고 월별로 징수상황을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그럼에도 덕산면에서는 쓰레기 종량제봉투 보유현황을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하고 있지 않고 징수상황 또한 보고하지 않는 등 쓰레기봉투의 공급과 판매 업무를 소홀히 추진한 사실이 있다.

⑩ 축산분야 FTA 폐업지원 사후관리 소홀

- 「축산분야 FTA 폐업지원 사후 관리 이행점검 결과 제출」 및 「농림축산식품부 폐업지원제 사업 지침」에 따르면 폐업한 농가에 대해서는 폐업 지원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매년 1회 이상 현지확인 및 매년 2회 이상 쇠고기 이력제 조회 후 확인결과를 폐업지원사업 관리카드에 기재 하여 5년간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럼에도 덕산면에서는 축산분야 FTA 폐업지원 사후 관리 대상 농가에 대한 폐업5년차 현장점검 실시 및 관리카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⑪ 산불진화장비 대장 관리 소홀

- 산림축산과-561(2020. 1. 6.)호와 관련하여 산불진화장비 배부에 따른 산불 장비 보유현황(수불부)에 대한 입·출고 현황을 대장에 기재하고 산불 장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 그럼에도 덕산면에서는 수령한 산불장비를 대장에 작성하지 않는 등 산불진화 장비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⑫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생석회 배부 소홀

- 「산림축산과-8624(2020. 3. 2.)호와 관련하여 구제역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을 위한 생석회 공급계획에 따라 소 농가(50두 미만 소규모 농가), 양돈농가에게 신속히 공급하고, 수불대장을 제출하라고 시달한 바 있다.
- 그럼에도 덕산면에서는 감사일 현재까지 수령한 소독약품 중 일부만을 농가에 배포하고 나머지는 보관하고 있는 등 소독약품을 적극적으로 배부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⑬ 제10호 태풍 '하이선' 대비 축산시설 등 사전대비 철저 업무 소홀

- 산림축산과-34545(2020. 9. 3.)호와 관련하여 제10호 태풍 '하이선'으로 인한 축산분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태풍 대비 축사시설 점검·홍보 및 가축 피해 발생농가 응급복구 지원이나 가축분뇨 침출·유출 관리 등에 대한 사전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이장 등에게 공문서를 시행하여 태풍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 그럼에도 예산읍사무소에서는 12건의 공사에 대해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1건의 공사의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하자검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⑭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정부양곡 할인 지원사업 소홀

- 「202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및 「19년부터 농림축산부 식량정책과로 사업이관」에 의하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신청 및 공급기간, 양곡 대금 및 납부방법, 납부 계좌번호, 양곡의 부정유통(판매) 유의사항 등을 포함한 정부양곡 할인지원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양곡구입 신청자로부터 대상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신청량 등 신청서 접수 및 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 그럼에도 덕산면에서는 신청자로부터 서면 신청을 받지 않고 유선 통화 및 구두로 정부양곡할인지원신청을 받아 행복e음 시스템에 입력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⑮ 장애인 재판정에 따른 업무처리 소홀

- 「2020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에 따르면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장애등급 재판정 통보서를 해당 장애인의 재판정 기한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장애등급 재판정 안내 공문을 통보하여야 하며 기한 내 서류제출이 없을 시 재판정 기한일 최소 1개월 전에는 한번 더 내용을 양지할 수 있도록 「서식 6 장애등급 재판정 촉구서」 발송하여 소정기일 내 장애진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 그럼에도 덕산면에서는 재판정 기한이 도래한 민원인에게 관련공문을 지연 발송하여 민원인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구비서류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축소하는 등 재판정 통보의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16 반송된 납세고지서·독촉장 공시송달 소홀

- 「지방세기본법」 제30조에 따르면 납세고지서 독촉장 등 서류는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 방법으로 송달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정해진 납기 내에 송달하기 곤란한 반송된 납세고지서, 독촉장에 대해서는 공시송달을 처리해야 한다.
- 그럼에도 덕산면에서는 반송된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중 공시송달대상에 대해 일부만 공시송달로 처리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추진한 사실이 있다.

17 상속에 따른 취득세 미신고분 수시 부과 소홀

- 「지방세법」 제20조에 따르면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1조에 따르면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럼에도 덕산면에서는 미신고한 취득세에 대하여 부과·등록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18 농기계 사후 관리 소홀

- 농정유통과-1980(2020. 2. 3.) 「2020년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추진 계획 알림」 및 농정유통과-608(2020. 1. 10.) 「2020년 원예작물 생력화 장비지원사업 추진 계획 알림」에 의하면 사업 완료시 지원 농업기계 공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서식4] “OO농기계 지원사업 사후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농업기계화 촉진법시행규칙」 [별표2] 농업기계 내용연수에 따라 사후 관리해야 한다.
- 그럼에도 덕산면에서는 [서식4] “OO농기계 지원사업 사후관리 대장”을 사용하지 않고 임의 작성 관리하는 등 행정의 통일성을 저해하고 행정력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한편 농업기계 사후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19 농지원부 관리 소홀

- 「농지법」 제49조제3항에 의하면 시·구·읍·면의 장은 농지원부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그 변동사항을 지체 없이 정비 하여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2020 농지원부 업무지침 및 시스템 사용요령」에 의하면 관리기관장은 연 1회이상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농지원부를 일제정비 하여야 한다.
- 그럼에도 덕산면에서는 농지원부를 작성·정리함에 있어 관련 규정에 따라 일제정비를 실시하지 않는 사실이 있다.

20 2020년 부직포활용 친환경 고추생산지원사업 업무 소홀

- 농정유통과-4846(2020. 3. 6.)호 「2020년 부직포활용 친환경 고추생산 지원사업 교부 결정 알림」에 의하면 2020. 6. 19.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신고하도록 하였으며
 - 농정유통과-16149(2020. 9. 1.)호 「2020년 부직포활용 친환경 고추생산지원 미추진 농가 완료 촉구」 공문을 통해 2020. 9. 15.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독려 및 관리해야 한다.
- 그럼에도 덕산면에서는 사업 미 완료 농가에게 관련 공문을 시달하지 않는 등 사업 추진 및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